

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0.01]
(제정) 2022.04.15 조례 제1418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노인장애인복지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2-450-5387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수노인”이란 주민등록상 만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수축하금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, 신청일 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지급액)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을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신청)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직계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급절차)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계양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
2.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

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,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제외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, 계양구 외로 전출한 경우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

제8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9조(대상자 관리)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 <조례 제1418호, 2022.4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조의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만 101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본다.